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욱준)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문 정리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신설(안 제10조)
 -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근거 신설(안 제10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교육과 직무수행 시 사고를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0조(편의 제공)에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10조의2(통장 교육)에는 통장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함.

○ 검토 결과

-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하는 통장 단체 상해보험과 통장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었지만, 명확한 근거는 없었던 실정임.
- 통장 역량 교육은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통장직무 및 공직선거법 숙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,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 진작 교육을 진행하고자 관련 예산 증감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었음.
- 한편 최근 고령화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통·반장 구인난이 극심한 실정이라는 각종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통·반장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특히, 통·반장은 행정시책 홍보, 전입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 보조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수행해 왔던 만큼 통·반장의 장기적인 공적은 자칫하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.
- 따라서,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교육과 공무 활동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통장 단체 상해보험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 제10조는 ▲공부의 무료열람 ▲공공시설의 무료이용 ▲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이 통·반장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,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에게만 해당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자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〈 수정의견 〉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편의 제공) 통·반장은----- ----- 공부(公簿)의 무료 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단체 상해보험 -----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편의 제공)</p> <p>①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(公簿)의 무료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통·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②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p>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51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6. 20.

제안자: 우경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주체가 통·반장으로 되어 있어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이 통·반장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,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일본식 한자어를 보다 쉬운 말로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10조의 “공부(公簿)”를 “공적 장부”로 수정함(수정안 제10조제1항)
- 안 제10조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제공 대상자를 통장으로 명확히 함
(수정안 제10조제2항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의 내용을 “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·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”로 하며,

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편의 제공) 통·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편의 제공) --- ----- ----- <u>공부(公簿)의 무료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단체 상해보험 -----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편의 제공) ① <u>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·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의 내용을 “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·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”로 하며,

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통장 교육 등)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 정리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신설(안 제10조)

나.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근거 신설(안 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4. 25.~5. 16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”을 “공부(公簿)의 무료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단체 상해보험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통장 교육 등)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편의 제공) 통·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편의 제공) ----- ----- <u>공부(公簿)의 무료열람,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단체 상해보험 -----.</u></p> <p><u>제10조의2(통장 교육 등)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